17世紀初 晋州地方의 里坊再編과 士族

李 海 濬*

Ⅰ. 緖 言
Ⅱ. 壬亂前의 里坊과「面」
Ⅲ. 壬亂後(17C初)의 里坊再編과 士族
1. 再編의 基本性格
2. 再編內容의 檢討(事例)
3. 再編背景과 士族
Ⅳ. 結 言

Ⅰ. 緖 言

朝鮮朝에 있어서 鄕村社會의 質的인 變貌를 추적할 때 壬亂을 분수령으로 하는 그 이전과 이후의 시기는 본질적으로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그러나 이러한 통념은 異族의 침입과 그 혼돈속에서 상대적으로 확대된 사회·경제면의 심각한 변화례의 지적이건, 16世紀史의 전개과정속에 새로운 변화의 요인이 있었다는 지적[1]이건을 막론하고 정작 鄕村自體의 문제에는 깊은 조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

麗末에서 鮮初, 그리고 朝鮮의 支配秩序가 확립되어 가는 과정에서 鄕村社會가 어떠한 構造를 모색하고 있는 지의 문제는 비교적 다각적으로 연구되어 왔고[2] 실제 몇몇 개별적·부분적인 사항의 견해차이를 논외로 한다면 그 실체가 구명되었다 하여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朝鮮初期에 일단 수습·정비되는 향촌질서가 16세기, 나아가서 兩亂을 경과한 17세기에 이르면 어떤 양상으로 변모되어 가는 것인지, 또 이 과정상에서 鄕村의 主導勢力으로 상정되는 士族의 鄕村影響力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에 대하여는 구체적 자료를 찾기가 용이하지 않다. 本稿는 이같은 문제의식에서 출발, 晋州地方을 그 분석의 대상으로 삼아, 壬亂을 前後한 시기의 鄕村組織變化와 그 過程上에서 투영되는 鄕村主導層의 存在를 조명한 試論的인 것이다. 筆者가 本稿에서 關心의 주된 영역으로 설정한 내용은 (1) 壬亂을 전후한 시기에 있어서 鄕村組織(里坊組織)上의 변모와 실태, (2)이 변화의 배후요인으로서 士族의 存在와 영향력의 검토,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아니면 表裏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3) 士族系列의 鄕村粘着傾向에 관련된다. 그러나 이상의 과제들은 좀더 엄밀히 세분할 때 面里制의 定着過程이나 運營實態와 同軌上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또 지역적으로도

* 木浦大學 專任講師

(1) 姜萬吉,「16世紀史의 變化」『分斷時代의 歷史認識』1978, pp.216~231.

(2) 李泰鎭, ①「士林派의 留鄕所 復立運動」上·下 震檀學報 34~35, 1972~3), ②「朝鮮前期의 鄕村秩序」(東亞文化 13집 1976).

각기 相異한 양상을 보여줄 소지가 다분한 것이다. 따라서 本稿는 앞서서 이루어져야 할 鄕村運營의 구체적 해명 및 유기적인 실태 파악이 미흡한 가운데, 그것도 한 局地的인 事例를 분석하는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鄕村組織의 외형적 변모나 그 과정상에 개입된 士族의 영향력, 그리고 그 배경으로서 士族存在의 실태를 밝히는 작업은 바로 이같은 일련의 연구와 직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本稿가 조그마한 가치라도 지닌다면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다.

한편 위에서 제시한 몇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임란을 전후한 시기의 향촌편제나 그 실상, 그리고 이와 관련된 사족존재의 실체가 투영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하다. 본고가 특히 晋州라는 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 문제에 접근케 된 것도 실은 이같은 자료상의 한계에 기인한다. 즉 ① 17세기초(1622～1633년)에 成編된 《晋陽誌》(成汝信 등 撰)[3]가 이상의 조건을 구비한 값진 자료이며, ② 진주지방의 士籍案인 《晋陽司馬原案(晋陽蓮桂案)》[4], 그리고 ③ 진주에 인접된 지역인 咸安·山陰·丹城 등의 邑誌·帳籍[5]이 주변 사정을 파악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전제한 몇가지 문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본고는 많은 한계와 미비점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들에 대하여 先學·同學 諸位의 아낌없는 叱正을 구하는 바이다.

II. 壬亂前의 里坊과 「面」

晋州地方의 경우 임란전의 里坊편성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술을 한 것은, 本稿가 주된 分析의 대상으로 삼는 成汝信撰의 《晋陽誌》(1633년)가 처음이다. 《晋陽誌》의 各里條는 晋州地方을 州內와 4方位面으로 나누어 예하 各里를 열거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① 各里의 위치 ② 4方의 인접 里名, ③ 屬坊의 數와 名, ④ 土地肥瘠度, ⑤ 住民成分, ⑥ 風俗 등등이 상세하게 기재되었고 특히 亂後의 廢合내용까지 첨기되어 있다.

이처럼 상세한 各里實相은 이전의 어느 地誌類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징적인 것이며,

---

(3) 현존하는 《晋陽誌》는 4種이 있으나 이 〈서울大 古 4790-17〉이 筆寫本으로 가장 오랜 것이며 內表에 成汝信 등의 私撰임을 밝히는 添記가 있다. 이밖의 晋陽誌들은 이를 토대로 轉寫 또는 後代의 事實을 添加한 것이며 19C末이후에야 成編되는 것들이다.

(4) 이 자료는 〈서울大 일사古 351,306〉으로 外表에 〈司馬原案〉으로 加筆하고 있으나 板本으로, 成册當時의 書名은 《晋陽蓮桂案》이었음을 쉽게 알 수 있다. 수록 내용을 보면 ① 晋陽蓮桂齋圖, ② 晋陽司馬案序(1738년, 許轄 撰), ③ 晋陽青襟錄小序 (1752년, 文宋奎撰), ④ 晋陽蓮桂案序(1841년, 李佑賓 撰), ⑤ 上同 (1841년, 鄭匡衡 撰), ⑥ 晋陽蓮桂案跋 (1841년, 朴士淳 撰), ⑦ 晋陽蓮桂案印刊跋(1905년, 鄭洛敎 撰), ⑧ 蓮榜案 上·下, ⑨ 桂籍案 上·下이다. 이 印本의 刊年은 1905년이며 舊序와 跋文을 통해 以前에도 꾸준히 진주지방의 司馬案이 追補되어 왔음을 알 수가 있다.

(5) ① 《咸州誌》(咸安邑, 鄭逑 撰, 1587), ② 《山陰帳籍》, ③ 《丹城戶籍》, ④ 이밖에도 晋州鄕校修理時의 《物財收集記》가 있는데 이 자료는 1832년 현재 晋州地方 各里의 幼學戶存在實態를 밝혀주고 있다(奎章閣圖書 No. 7156).

晋州地方에 관한 한 전국적 규모의 官撰地誌였던 《慶尙道地理誌》나 《世宗實錄地理誌》·《東國輿地勝覽》 등과 비교할 때 質的으로 큰 차이를 느끼게 한다. 우선 100여개가 넘는 里名이 그렇고, 里別實相이 다양하게 묘사된 것, 더우기 자연촌적 성향이 돋보이는 屬坊의 수와 명칭이 기재된 것은, 壬亂以前과 以後의 郡縣의 下部構造를 이해하는 기초자료로서 충분한 가치를 인정받을 만하다.(6)

어쨌든 《晋陽誌》 所收의 개별적 사실이나 성격에 대하여는 後述할 것이므로 본절에서는 먼저 里坊組織上의 外形的인 문제만을 거론하기로 하겠다.

〈表 I〉 壬亂前의 里坊編成

지 역	面	總里數	屬坊이 있는 里					無屬坊里
			里數	屬坊數	最多	最小	平均數	
晋州	州內	14	—	—	—	—	—	14
	東面	24	22	110	12	1	5.0	2
	西面	33	27	165	14	1	6.1	6
	南面	28	25	125	11	1	5.0	3
	北面	13	13	84	21	1	6.5	—
	計	112	87	484	21	1	5.6	25
咸安	區分無	17	17	145	16	1	8.5	—

위의 〈表 I〉은 《晋陽誌》 各里條를 토대로 〈面—里—屬坊〉의 계열조직을 살펴보기 위해 만든 것이다. 우선 面과 里의 규모를 상정하기 위해 面과 面別里數를 제시하였으며, 各里의 경우는 屬坊이 있는 里와 없는 里를 구분하여 평균치를 구하였다. 한편 《晋陽誌》와 거의 같은 체제와 내용을 기재하고 있는 같은 시기의 《咸州誌》 例를 並記, 비교하였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面은 4方位面과 州內의 5개이고 壬亂前 총 112개의 里중 屬坊을 갖는 里는 모두 87개였다. 屬坊이 없는 里는 25개로 전체의 21.4%나 된다. 따라서 每里 평균 5~6개의 屬坊을 가지되 최다의 경우 21개의 속방을 가진 里(北面 省臺洞里)도 있다. 한편 대비되는 咸安의 경우는 아예 面區分이 없고 屬坊이 없는 里는 하나도 없으며 관할 속방수가 평균 8~9개로 약간 많은 것이 특징이다. 좀더 세분해서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各里의 上層構造로서 「面」의 존재에 대한 문제가 상정된다. 당시 晋州는 5개면(州內와 方位名으로서의 4개 面)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이들 面의 존재가 과연 行政上 어느 정도의 통제력과 조직적 연계성을 가졌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는다. 다만 이들 各面의 소속리가 많은 경우 30개이상 적은 경우 10수개로 大小間에 현격한 差異가 있고, 位置上 各面의 分離가 애매하여 당장 같은 《晋陽誌》의 戶口·田結條와 소속 面의 착종이 드러난

(6) 이것은 《晋陽誌》가 私撰이라는 데 근본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거의 같은 시기에 私撰으로 편찬되었던 一群의 嶺南地方邑誌 (鄭逑의 《咸州誌》 1589년, 權紀의 《永嘉誌》 1608년, 李埈의 《一善誌》 1632~35(?)년) 들과 比較·詳論할 소지가 많다.

다는 점, 그리고 인접한 咸安의 경우 아예 面名을 발견할 수 없다는 사실 등을 통해 보면 이들 面의 존재는 어쩌면 단순한 方位表示 이상의 의미를 갖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다. 이같은 유추해석은 時差가 있는 《輿地圖書》(1759년) 晋州牧條와 比肩하여도 인정될 소지가 있다. 즉 《輿地圖書》에 수록된 各道 各郡縣의 邑誌들에는 이미 대부분 〈面—里〉의 실체가 戶口나 田結數의 파악에서 나타나고, 원래의 里가 〈面〉으로 재편됨에 따라 ○○里面, ○○洞面, ○○村面 등과 같은 固有名과의 접합이 돋보이는데, 이같은 추이속에서도 晋州의 경우는 《輿地圖書》에 面이 없는 里名만이 열거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面名의 後代記錄에서의 不出 현상은 面里組織의 不實을 의미하는 것일 수 있고 대체적인 面里制의 정착을 17세기 이후(壬亂以後)로 상정하는 견해[7]를 참작할 때도 晋州地方에서 壬亂前에 이미 구획된 이들 「面」은 단순한 方位表示였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처럼 《輿地圖書》에 보이지 않는 「面」이 《戶口總數》에 나타나고, 특히 面名別로 戶口·田結을 산출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面里制의 定着을 의미한다고는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戶口總數》에 나타나는 다른지역의 「面」이 《晋陽誌》의 「里」와 크게 大別될 아무런 까닭이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처럼 晋州地方의 面里制 정착이 다른 지방과 대비하여 상대적으로 뒤지고 있는 것은 晋州의 경우 里坊組織이 지닌 강한 粘着性向 때문으로 이해 해야 되지 않을까 한다.

즉 晋州地方의 경우, 壬亂前(혹은 直後)의 《晋陽誌》에 「里」로 기재된 各里가 《輿地圖書》나 《戶口總數》에 그대로 「里」로 나타나는 것과 대비하여, 晋州에서 河東府로 移屬된 陳畓里와 岳陽里[8]가 《輿地圖書》 河東府條에 「面」으로 표시된 것은 바로 이런 지역적 특수성의 단적인 예이며, 《輿地圖書》와 《戶口總數》의 晋州地方 里들은 사실상 같은 시기 다른 지방의 面과 比肩되는 규모였다. 그런데 面里體系의 국가적 통제가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1674년(肅宗 元) 〈五家統節目〉에서라고 추측된다. 즉 〈五家統節目〉 제 5 조에

> 有統有里 以屬於本面 面有都尹·副尹各1人 所統多少 各隨民戶之多寄·殘盛 面稱之以某面第一里 以至二三四五六 亦隨其里之多寡

라 하여 各里의 大小에 따라 順次的으로 面의 관할 지역을 삼는다고 한 것이 그것이다. 그리하여 晋州와 인접한 丹城地方의 戶口帳籍은 이러한 節目體制에 따라 各面과 예하 各里를 제 1 리·제 2 리로 하고 固有名을 병기하였다(例 元堂面 第二里 內元堂村). 물론 丹城의 경우도 里의 大小順位는 지켜지지 않았으나 일단 〈面——里〉의 체계만은 실현되고 있으며, 晋州의 경우도 이와 같았을 것으로 보인다. 만약 方位的인 面아래에 各里를 그대로 並列할 경우 1개면에 소속된 里名單位의 戶口羅列은 오히려 대단한 번잡을 초래할 수밖에 없

(7) 李樹建, 「直村考」(『大丘史學』 제 15·16집 1978) pp. 16~30.
(8) 이들 두개 里는 晋州의 西一隅에 偏在한 지역으로서 이들의 河東移屬에 대하여는 《文獻備考》 輿地考 五에 言及되어 있다.

고[9] 어쩔 수 없이 屬坊의 村(洞)名을 里로 昇格시켜야 했을 것이다. 그리고 이에 따라 본래의 里名은 面으로써 파악되었을 것으로 보아진다. 咸安의 경우 《咸州誌》의 里가 《輿地圖書》에 面으로 표기된 것도 결국은 이같은 추이의 반영으로 이해할 수 있다.

특히 이같은 경향을 직접 추찰·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蔚山帳籍》인데, 壬亂前의 1585년 帳籍에 〈方位面—各里〉였던 체계가 壬亂後(五家統節目의 실행이후)인 1684년 帳籍에서는 方位面이 사라지고 各里가 面으로 昇格, 그 아래에 順次가 정해진 各里(村·洞·坊)를 列記하고 있다. 이것은 바로 전제한 地域村的인 里가 面里制下에서 面으로 승격되고 자연촌적 屬坊이 各面의 下部組織으로 里名을 갖게 된 실례이다.[10] 결국 晋州의 경우, 戶籍이 남아 있지 않는 탓으로 다만 추정이 그칠 수밖에 없지만, 《晋陽誌》 所收의 里는 面으로 改稱되었을 가능성이 큰 것이며 《輿地圖書》에서까지 다른지방과 다르게 오직 里名 그대로 남아 있게 된 것은 晋州地方의 各里가 갖는 강한 傳統性이나 粘着性에 연유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다.

이상에서 번잡하게 面里制와 관련된 논의를 열거한대로, 晋州地方의 경우 「里坊」體制는 다른 지방의 「面里」體制와 類를 달리하는 특수한 면모를 보여준다. 아마도 이러한 地域的 特性은 面里制의 定着으로 파악되는 17세기 이후에도 끈질기게 남아 있었던 모양이며, 이것은 이 시기 인물인 磻溪 柳馨遠(1622～1673)이

> 按今各邑掌面…其稱號不一 雖例皆稱之曰面, 而其間或有稱道者 稱里者 稱村者 黃海·平安道則稱之以坊 咸鏡道則稱之以社 蓋因陋襲苟而然也[11]

라고 하여 각 지역마다 혼잡한 명칭으로 불려지고 있음을 지적하는 것으로도 알 수 있다.

결국 우리가 《經國大典》에서 〈面—里—統〉의 체계상 〈統—里〉의 관계는 거론이 되면서도 里와 面의 체계가 모호함을 발견하게 되는 것도 따지고 보면 이같은 제도적 규례가 이용될 수 있을 만큼 鄕村組織이 정비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面里制를 이해할 때 그 掌任格인 面任이나 里正·里任의 계층적 구조를 용이하게 파악하지 못하는 것도 이러한 地方的 規例의 混淆에 기인하는 것이며,[12] 面里體制가 定着되는 것과 짝하여 이들 里正이나 面任들은 守令의 下手人的 存在로 탈바꿈하여 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士族들이 이러한 鄕任을 기피한다는 일반적 추세[13]는 거꾸로 守令權의 이들에 대한 간섭의 노골화와 연결

(9) 만약 그대로 里와 예하 各統을 병렬할 경우 기재상 매우 번잡한 사례가 생길 수 있다. 즉 各統의 구성이 단지 5戶로써만 이뤄지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屬坊이 21개나 되는 경우 같으면 지극히 혼잡한 내용이 될 것이다.

(10) 이것은 《山陰帳籍》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11) 柳馨遠, 《磻溪隨錄》 補遺 卷 1 郡縣制條

(12) 이 문제는 本稿의 주된 해명대상이 아니지만 다른 어느 분야보다도 地方的 特色이 다양하게 나타날 소지가 크고 또 실제 이 부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도 미진한 형편이다.

(13) 이는 우선 《五家統節目》에도 언급되고 있지만 金克亨(～1663)은 그의 《沙川集》 〈帖鄕所·里約〉條에서 "……人恒言 鄕所爲官心腹 里約爲官耳目……"이라고 까지 지적하였다.

되는 것이고, 상대적으로 鄕任을 맡는 계층이 종래의 士族과 對別되어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결과와 짝한다는 것은 바로 그같은 추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둘째로는 各里와 그 屬坊間의 연관문제를 살필 수가 있다. 이는 앞에서 거론한 자연촌의 里로의 성장과도 관련되는 것이다. 〈表 Ⅰ〉에서 보았듯이 里別 平均屬坊은 5~6개였고 많은 경우는 21개까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屬坊數는 실제 그 所屬里의 戶口·田結數와 비례하는 것은 아니었다. 즉 屬坊의 규모가 어떠한 기준에 의해 결정된 것이 아닌 自然村的 「마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坊과 里 사이에는 순수한 「自然村으로서의 屬坊」과 이들이 通稱될 수 있는, 나아가서는 末端行政體系로서 규합된 「地域村으로서의 里」라는 차이가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것은, 물론 직접 연관시킬 성격은 아니지만, 晋州의 경우 《晋陽誌》에 里로 나타난 것들이 1834년 金正浩撰의 《靑邱圖》에서 그대로 面으로 변모되고 있는 것으로도 그 성장추이는 예견되는 바 있다.(14)

한편 이들 屬坊이 없는 里와, 단 1개뿐인 里를 통해 우리는 各里와 屬坊間의 구조를 엿보게 된다. 즉 各里의 屬坊이 대개는 里名과 無關한 名稱들을 가지고 있으며, 屬坊이 없는 里와 단 1개뿐인 里가 구별된다는 것은, 어쩌면 該里의 중심되는 自然村名(나아가서는 범위·인적구성)이 그대로 里名으로 승격된 때문에 坊名으로 표출되지 않았던 것같다.

그런데 《晋陽誌》와 비슷한 시기에 동일한 체제를 갖춘 《咸州誌》에서 里名의 일괄적인 改稱이 1586년(宣祖 19)에 이루어지고, 改稱된 新名이 舊名과 類似한 것(例 : 竝火谷→竝谷里, 坪館→平廣里, 山八→山足里, 阿道→安道里 등)은 固有名의 連用例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晋州의 경우 里名改稱이 나타나는 것은, 문제의 屬坊이 없는 鼎村里뿐으로 前名이 「薩禮」였다. 이렇게 보면 鼎村里도 固有名의 維持·傳承은 아니었던 셈이며, 결국 屬坊이 없는 里의 경우도 固有名을 連用한 것은 아니었다. 따라서 전제한대로, 里名으로 승격된 종래의 自然村은, 屬坊으로 처리되지 않은 채 各里의 中心으로 남아 있었을 개연성이 크며 엄밀한 의미에서 《晋陽誌》에 실린 屬坊數外에 1개의 本坊이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15)

다만 여기서 약간의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屬坊이 없는 里의 경우 月牙彌里·班龍浦里·斷俗里·昌善里처럼 甕匠·牧子類의 특수 匠人居住地가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筆者의 생각으로는 아마도 이들이 特殊身分層의 集居地로서 여타 일반적인 里坊처럼 分坊없이 존속하였던 때문이 아닌가 한다.

물론 예외적으로 鼎村里처럼 壬亂後 他里를 병합하여 他里와 대등한 里로서 계속 성장해

(14) 그러나 비슷한 시기의 자료인 《晋州鄕校修理時物財收集記》 註 (5)의 ④에는 《靑邱圖》에 나타난 面이 各里로 표시되고 있다. 이는 실제 행정적으로는 面으로 지칭되면서도 역시 各里가 중시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겠다.

(15) 이 문제는 좀더 주의를 요하는 중요한 것이지만, ① 新堂里의 경우 같이 內·外洞이 다시 분리되는 것, ② 대부분의 驛村이 驛名에 따라 里가 되는 것, ③ 三壯의 경우처럼 里名이 새롭게 지어지는 경우 등등을 통해서도 이런 추이는 타당한 것이 아닐까 한다.

가는 경우도 있으나, 나머지는 모두 里의 약세나 지역적 편재에 연유한 경우였다. 그리고 州內의 14개 里도 屬坊이 없는 里로서 亂後 3개 里로 재편되는데, 이들 州內 各里는 다른 面의 경우보다 일찍 「명칭상의 里」名을 획득할 소지가 많고 규모상으로도 各面의 里보다는 屬坊과 대비되어야 한 성질이었다.

끝으로 「里」의 성장과 里名의 정착에 관해서 부언코자 한다. 100개 이상의 里를 管割하는 地方官은 《輿地圖書》의 例를 추적할 때 대체로 牧使이상으로 보아지고, 작은 郡縣의 경우도 40~50개 또는 70~80개씩되는 예는 허다하여 특히 晋州가 많았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들 各里가 自體名을 가지고 存在하게 되는 것은 종래의 自然村的 혹은 屬縣·部曲·鄕·所와 같은 任內의 直村化 과정이라는 地方組織의 변화를 겪으면서였다.[16] 〈表 Ⅱ〉는 바로 이같은 里의 成長을 추적, 前身을 밝힌 것이다. 결국 이러한 屬縣이나 部曲·鄕·所의 里名 획득은 任內의 革罷·直村化에 부수 또는 先行하여, 때로는 특수주민 집거지역으로서 때로는 신분적 특수지역에서 雜居地域으로 변모되면서 대등한 1개 里로 정착되어 왔던 것이다. 물론 이들 지역에 대한 士族의 賤視는 오히려 당연한 것이고, 그에 따라 이들 里中 몇개를 제외한 대부분은 이후 廢合되게 된다.

〈表 II〉 원래명칭(前身)이 추적되는 里[17]

구 분	里 名	屬 坊 數	前 身	구 분	里 名	屬 坊 數	前 身
屬縣→里	班 城 里	8坊	班 城 縣	鄕→里	末 文 里	11坊	末 文 鄕
	岳 陽 里	14坊	岳 陽 縣		松 谷 里	4坊	松 谷 鄕
	雲 谷 里	5坊	屈 村 縣		永善縣里	5坊	福 山 鄕
部曲→里	花開縣里	10坊(廢)	花開部曲	所→里	火 谷 里	4坊	火 谷 所
	矢 川 里	9坊	薔川 〃		大 谷 里	5坊	大 谷 所
	針 谷 里	2坊(廢復)	針谷 〃		北 方 里	3坊	伏 大 所
	月牙彌里	〃(廢)	月牙 〃		水 谷 里	8坊	水 谷 所
	昌善島里	〃(廢)	有疾 〃	直村→里	法 輪 里	4坊(廢)	直 村
	於 牙 里	6坊	於牙 〃		槽 洞 里	3坊(廢)	〃
	大也川里	? (復)	大也 〃		多勿谷里	2坊	〃
	鳴 石 里	9坊(廢)	粟谷 〃		月背谷里	2坊(坊)	〃
	獜 潭 里	2坊(廢)	獜潭 〃				

한편 이상과 같이 특수지역촌으로서의 유래가 없는 나머지의 里들은 自然村的 地位를 상승시켜 가면서 대등한 自然村과 결합(里名의 複合例)하거나 상대적으로 열등한 同類의 自然村들을 屬坊으로 예속시켜 가면서 자체의 固有名을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里名 가운데 보이는 ○洞里·○谷里·○川里·○村里 등의 예가 바로 그런 경우를 예증하는 것이다.

(16) ① 李樹建 : 「直村考」(大丘史學 15·16 1978). ② 李泰鎭은 이같은 自然村이 독자성이 강한 里로 성장되는 麗末의 향촌변화를 주목하고, 이에 대한 中央政府의 견제를 지적한 바 있다(李泰鎭, 註 (2)의 ①)

(17) 《晋陽誌》 各里條 및 古蹟條 참조. 이들 屬縣·鄕·所·部曲의 直村化 경위에 대하여는 前揭 李樹建의 논문에서도 일부가 밝혀지고 있다.

III. 壬亂後의 里坊再編과 士族

1. 再編의 基本性格

이상에서 살펴 본 晋州地方의 里坊組織은 임란을 경과하면서 야기된 鄕村社會의 변모와 짝하여 대대적인 개편을 보게 된다. 이 재편의 가장 큰 특징은 里數의 대폭감소라고 할 수 있겠는데, 亂前의 112개 里가 亂後에는 그 절반에 불과한 59개 里로 감소되었다.[18]

이러한 里坊數의 대폭 감소는 부언할 필요도 없이 經亂의 피해정도나 실태와 긴밀한 연관을 갖는 것이고 田結·戶口의 축소에 근본적인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같은 경제실상이나 수취체계의 와해에 짝하여 말단 향촌사회의 편제상 또다른 質的變化의 계기가 內在한다는 점이다. 즉 里의 통합·감소에 따라 屬坊으로 기록된 村·洞·谷과 같은 자연촌적 존재가 새롭게 다른 里에 편입되므로써 생기는 다양한 문제가 그것이다. 《晋陽誌》의 기록만으로는 이들 屬坊의 성격이나 규모를 앞절에서 논의한 이상으로 밝히기는 어려우나, 이들 自然村을 행정적으로 결속시킨 것이 地域村으로서의 〈里〉라는 점을 생각할 때[19] 里數의 감축은 결과적으로 그 예하 屬坊數를 증가시켜 亂前보다 많은 지역을 소속하에 두게 하였을 것이다.

결국 再編過程을 통해서 야기되는 이같은 屬坊의 所屬里 變更은, 地方守令權의 입장에서는 결코 커다란 변화나 문제가 될 수 없을 것이지만, 실제 그 과정을 경험하는 각 里·坊들의 경우는 매우 복잡한 여러갈래의 문제들을 직면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8) 물론 진주지방에서 里坊組織이 再編된 것은 壬亂을 전후한 시기뿐만이 아니고 그 뒤 계속적으로 이뤄진다. 각 재편시기와 관련내용을 표로 만든 것이 아래의 別表 1이다.

〈別表 1〉 재편시기별 里坊편성내용

再編時期	A	B	C	D	E	F
	壬亂前	壬亂直後	復舊 (1622~33)	1759년	1789년	1832년
里數	112	59	73	70	72	74
戶	(6,680)			13,966	15,028	15,671(14,359)
口	(23,056)			65,098	69,495	71,808
田	(969結36負4束)			7,554結61負5束		4,849結90負6束
畓	(2,999結69負)			8,206結60負8束		6,538結27負4束
參考資料	成汝信撰《晋陽誌》草本		⟶ 成編	《輿地圖書》	《戶口總數》	《慶尙道邑誌》《晋州鄕校移建事蹟》

위의 표에서 우리는 전체 里數의 변화추이를 주목해야 하며, 특히 D의 《輿地圖書》 이후 대체적인 里數의 정착추세는 조선조에서 面里制의 정착이라는 法制的 결과와 짝하는 사실로 이해해서 무리가 아닐 것이다.

(19) 이 점에 관한 한 진주지방은 다른 지방(예를 들면 面里制定着이라는 시각에서 밝혀지는)의 面里와 약간 位差가 있음을 이미 지적하였었다. 진주지방의 里는 다분히 다른 지방이나 후대의 「地域村的인 面」과 상관된다.

즉 한 개의 自然村으로서의 屬坊이 본래의 소속리를 떠나 새로운 里의 統制下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 徵稅·賦役·鄕任擇定 등등의 行政上 鄕村勢力間의 주도권 쟁취나 利害의 상충·타협과정이 있게 마련이고, 이런 여러 樣相들은 바로 鄕村秩序의 본질적인 변화요인으로서 작용하였을 것이다.

실제 里數의 축소가 가져온 屬坊의 숫적 증가를 보기 위해 만든 것이 다음의 〈表 Ⅲ〉이다. 壬亂後 새롭게 편제된 各里의 평균 속방은 8~9개로 亂前 5~6개에 비해 크게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30개나 되는 屬坊을 관할한 北面 省臺洞里와 같은 里는 亂前에 관용할 수 있었던 방식이나 인적구성만으로는 亂後의 소속 坊들을 통할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더우기 屬坊數의 증가보다 더욱 커다란 이해의 상충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數個里의 통합[20]은 里任層間이나 이와 결합된 土着支配層間의 복잡한 문제들을 제기하였을 것이다.

〈表 III〉 再編前後의 屬坊數

區分	壬亂前	再編後
총 里 數	112	59
평균 屬坊數	5~6	8~9
최다 屬坊數	21	30

* 壬亂前 屬坊總數 484개 기준

물론 우리는 柳成龍(1542~1607)이 지적하는 바

今日亂離之餘 各於民居稀濶 或數里而一家 或十里而一於隱 匯聚收合爲一哨[21]

라는 것처럼 經亂直後 村里의 廢虛狀은 실로 처참한 지경이었고, 이같은 사정을 감안한다면 亂前의 坊里中에는 자연 소멸된 경우도 적지 않았을 것이며, 때문에 위와 같은 屬坊數의 산출을 다소 무리한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같이 亂中에 소멸된 村里의 경우는 亂後復舊과정에서 새로운 卜居地로 채택·부활될 여지가 크기 때문에 各里의 통할범위 증대는 기정적 사실이었다.

한편 문제의 廢合里들은 복구과정에서 어느 정도 종래의 里名을 획득, 還分되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다음의 〈表 Ⅳ〉는 앞의 註 18)에서 제시했던 別表의 例처럼 각 재편시기별 里坊增減을 내용별로 분류한 것이다.

여기서 복구된 里는 他里에 비해 亂中의 피해가 막심하여 인근의 유력한 里에 일단 폐합

(20) 예를들면 大坪里처럼 주위의 4개리를 통합했던 경우나 龍鳳里, 槽洞里, 省乙山里, 雪梅谷里 등처럼 亂後 주위의 2~3個里를 統合歸屬한 경우, 屬坊數도 크게 증가하지만 종래에 편입된 里를 구성했던 里任間의 상충은 훨씬 심각하게 작용되었을 것이며, 이같은 鄕村組織上의 변화는 鄕村에 있어서의 質的(秩序) 再編과 상관되었을 것이다.

(21) 柳成龍, 《西厓集》〈軍門謄錄〉 丙申(1596) 正月初三日條. 한편 이런 경향을 진주지방의 경우로 예시하면 琴山里의 경우 琴山洞約序(1616년, 成汝信撰)에 「琴山如代如村 合爲一里者 兵火之餘 人烟蕭瑟 十室九空 故并二爲一也」라하고 있고, 李睟光은 그의 《芝峯類說》 卷3 〈兵政部〉에서 「晋州城陷 六萬人同日殲焉 搜山剔藪 殺掠士女 罔有紀極」이라고 진주의 戰禍를 기록하고 있다.

〈表 IV〉 재편시기별 변화내용

區　分	A→B 亂前～亂直後	B→C 亂直後～復舊	C→D 復舊～輿地圖書	D→E 輿地圖書～戶口總數	E→F 戶口總數～韓末
증　가		● 12 ○ 4	● 4 ○ 9	● 1 ○ 2	● 1 ○ 1
감　소	△ 53	移屬 2	× 16	× 1	
里　數 (재편후)	(112)59	73	70	72	74

* ●: 복구, △: 폐합, ○: 신설, ×: 폐치

되었다가 亂前의 전통을 회복, 자체명을 획득한 경우이고 廢置는 영구히 再生하지 못하고 자체 里名을 상실한 경우, 신설은 亂後 통합으로 비대해진 大里를 다시 분리한 경우이다. 〈表 IV〉가 보여주듯이 일단 복구가 完了된 뒤라 해도 총 里數는 亂前의 60～70%에 머무는 실정이다.[22]

2. 再編內容의 검토

그러면 이제 앞의 〈表 IV〉에서 제시한 壬亂을 전후한 시기의 里坊再編內容(A→C)을 좀 더 상세하게 분석하므로써 재편의 특징적 성격을 검토하기로 하자. 다음에 사례로서 지적하는 내용은 이 壬亂前後의 再編(統合과 還分)이 대체로 (1) 유력한 조건의 里를 모체로 인근의 1개 또는 몇개 里가 결합되므로써 里數가 축소되든가(事例 I), (2) 아니면 편의상 통합되었던 有力里가 일정기간이 경과한 뒤에 본래의 里名을 다시 획득하여 분리되는 경우(事例 II), 그리고 (3) 재편후의 各里와 士族住居의 상관관계를 검토(事例 III)한 것이다.

〔事例 I〕: 再編時 폐합된 里坊의 경우

成汝信撰의 《晋陽誌》中 壬亂後에 폐합된 것으로 나타난 방리의 수는 모두 53개였는데, 이들 53개 里의 성격을 同誌 坊里條에 나타난 바를 토대로 분류하여 만든 表가 다음의 〈表

〈表V〉 17C初 廢合里의 占有率 (田品 및 住民)

區　分	田品					住民					
	肥	中	瘠	不明	計	士多	士居	無士 平民	雜賤	不明	計
壬亂前 112里 기준	47	29	35	1	112	24	13	51	12	12	112
폐합된 53里 기준	26	10	16	1	53	5	6	28	9	5	53
占有率 (%)	55	34.5	45.7	100	(47.3)	20.8	46.1	56	75	41.9	(47.3)

(22)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복구의 과정을 통해 정착되는 里數(70여개)가 이후의 《輿地圖書》나 《戶口總數》《慶尙道地理誌》와 비교할 때 대체적으로 固定되는 것을 보게 된다. 이것은 앞절에서 지적한 바처럼 朝鮮朝에 있어서 面里制의 定着이 이러한 향촌조직의 정비와 같은 궤도상에서 이룩될 수 있었던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겠다.

Ⅴ〉이다. 이 표에는 壬亂前의 전체 방리와 廢合里의 성격을 구분·분류하고 그 상대적인 점유비를 함께 제시하였다.[23] 전체적으로 壬亂前 里坊의 47.3%(53개 里)를 점유하는 이들 폐합리의 성격을 표를 참조하면서 분석하기로 하자.

우선 亂後 里坊再編의 제 1 차적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田地의 肥瘠度와 廢合例를 보면, 총 53里中 肥沃한 里가 26개로 49%, 中이 10개 里로 19%, 瘠蕩이 16개 里로 32%를 각각 점유한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피해의 실상을 반영하는 것이며, 오히려 壬亂以前의 全體 里坊과의 對比를 통해서 廢合의 성격이 잘 드러날 것이다. 즉 만약 物產이나 收稅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廢合이 決行된 것이라면 肥沃한 田地를 지닌 里는 그렇지 못한 里보다 적게 폐합되었어야 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表에서 보는 바처럼 총 47개의 肥沃한 里中 26개 里(55%)가 폐합되고, 肥瘠相半의 경우도 29개里中 10개 里(34.5%)나 폐합되었던 것을 미루어 볼 때, 그 같은 해석이 전혀 무리임을 알게 된다. 물론 이들 肥瘠度에 있어서 中間以上의 里가 총 76개 里中 36里(48%)나 폐합되었다는 것은 전체리방수의 대폭 감소경향과 비교해서 커다란 位差는 아니다. 그러나 전제한 「有利」한 조건의 里로써 田地가 肥沃했던 里가 그렇지 못한 里와 동등하게 폐합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은, 廢合의 條件上에 物產이나 田地가 커다란 요인이 아니었음을 의미하며, 더우기 후술할 士族住居의 강한 상관성과 비교하면 좋은 대조가 된다. 만약 士族住居의 영향을 배제한다면 이상에서 나타나는 통계치는 里坊廢合의 條件이 物產이나 田地보다 經亂中의 피해정도에 의해 결정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일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再編過程에서 各里에 住居하는 士族의 存在가, 혹은 그 영향력이 반영되었다고 생각되는 통계치를 같은 위의 表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亂前 士族居住로 기재된 37개里中 11개 里(29.7%)만이 廢合된 것이나, 無士族 또는 平民雜居의 경우 총 63里中 37개里(60%)가 폐합된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비율은 士族住居의 정도와 비교할 때도 士族多居에서 平民·雜賤居住里로 갈수록 20.8%~46.1%~56%~75%로 증대되고 있었는데, 이를 바꾸어 말하면 士族住居와 廢合이 서로 반비례관계가 있다는 것이 된다.[24]

---

(23) 里의 특징은 《晋陽誌》 各里條를 토대로 類例를 표로 모은 것이며 참고로 同類의 표로 모은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A. 田地의 肥瘠區分〕: 肥饒·沃厚·土沃·膏腴 등은 〈肥〉로, 地狹·瘠薄·多瘠·卑下 등은 〈瘠〉으로, 그 나머지 相半 혹은 參半類는 〈中〉이라 하였다.

〔B. 住民의 構成〕: 士族에 관한 내용은 가능한 그대로 살려 士族의 多居·世居를 〈士多〉로, 士族居 및 士族移居地로써 「古無今有」나 移居姓氏가 명시된 경우는 〈士居〉로, 士族에 대하여 「古有今無」나 無士族으로 된 경우는 〈無士·平民〉으로, 匠人·牧子·舟師·公私賤類는 〈雜賤〉으로 하였다.

(24) 물론 이러한 조건에 不合하는 例外的인 경우도 없는 것은 아니나(士族多居의 5개里와 士族居의 6개里, 無士族·平民居住의 23개里, 雜賤居住의 3개里), 만약 再編 과정상에서 이 정도의 例外的인 存在도 전혀 없을 수는 없겠다.

위의 상관을 좀더 면밀히 살필 수 있는 것이 다음의 〈表 Ⅵ〉이다. 이 표는 폐합율을 田地·住民別로 대비하여 산출한 것인데, 표에서 〈肥沃↔士多〉의 경우 9.1%라고 하는 것은 (*표) 土地肥沃이면서 士族多居인 里 11개중 폐합된 1개의 점유율이다. 이 표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① 雜賤類가 거주하는 里가 대부분 폐합되고 ② 無士·平民類가 거주하던 肥沃한 里가 76%나 폐합된 사실이다.

〈表 VI〉 田品·住民別 폐합률

田品 \ 住民	士 多	士 居	無士·平民	雜 賤	不 明	計
肥 沃	*9.1	50	76	50	100	55.3
中	33.3	50	25	50	33.3	34.3
瘠 薄	25	33.3	38.9	100	40	45.7
不 明	—	—	—	100	—	100
計	20.8	46.1	56	75	41.9	47.3

①의 경우는 物產이나 收稅源으로서의 기여도가 적었음에 연유하거나 里勢가 劣下했기 때문이었겠지만 ②의 경우는 얼른 이해되지 않는다. 더우기 田地가 肥沃하지 않은 里로서 平民類가 거주했던 경우 25%, 38.9%로 폐합율이 작은 것과 상관시킬 때 그 당위성은 더욱 감소한다. 鄕村社會에서 영향력을 지닌 士族層이 卜居地로서 비옥한 지역을 선택·확보할 수 있음은 당연한 귀결이겠지만, 특히 里坊이 대대적으로 再編되는 시기에 그것도 76%에 달하는 비옥한 平民集居地가 폐합되어 버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실제 이들 76%의 폐합리를 소속시키는 인근의 里들은 住民 중 士族勢가 강하다는 점에서 「有力」이 인정된다.[25] 이것은 바로 士族들이 經濟的 條件이 양호한 지역으로 移居한 결과 이거나, 아니면 士族系의 영향력이 열세인 지역——平民類의 集居地域(里)——을 폐합, 그들의 관할로 삼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같은 士族的 背景(영향력)과 里坊再編의 밀접한 상관은, 물론 論者에 따라 異見이 있을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筆者로서는 오히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또는 절대적인 연관성으로 이해하고 싶다. 이것은 뒷절에서 다시 언급되겠지만 당시 晋州地方의 士族動向 즉 鄕村主導力의 增大(確保)라는 현실과 表裏를 이루는 것이기도 하거니와, 이는 再編後에 復舊되는 里坊의 경우를 통해서 좀더 확연히 예증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事例 II〕: 再編後 復舊되는 里

前述한 里坊減小에 뒤이어 亂後 復舊活動의 진전에 따라 復舊·新設되는 里가 생겨난다. 구체적으로 이들이 復舊·新設되는 연대는 1606년(宗化里), 1623년(五邑谷里)만이 보일 뿐이며, 나머지는 정확한 연대를 추정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실제 《晋陽誌》가 일단 草本으

(25) 대등한 경우는 11개里였다.

로 완성되는 연대가 1622년~1632년사이임을 비추어[26] 그 무렵에 이루어진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 이 시기는 晋州에서 經亂後 諸部面의 復舊活動이 거의 매듭지워져 가는 시기이기도 했으므로 그와 함께 병행된 것이었다고 추측된다.

이 과정상 復舊되는 里는 12개이고 新設되는 것이 4개 里인데 이 중 新設된 4里는 草本《晋陽誌》가 成編된 이후의 添記文中에

今西面之新豊·大覺 北面之安碩·集賢 誌後作面 而且中間之沿革 無常分合居多

라 하여 정확한 신설의 시기나 변화의 실제를 파악할 수가 없음을 기술하고 있다.

따라서 이 과정상 분석의 대상은 다만 복구된 12개里로 하였으며, 다음 〈表Ⅶ〉이 이들 復舊例를 대상으로 이들을 통합했던 소속리의 성격과 대비시킨 것이다. 이 대비는《晋陽誌》의 各里條 및 戶口·田結條를 토대로 한 것이다.[27]

〈表VII〉 복구된 里와 원 소속리의 대비

복구된 里 (12개)	소속리와의 대비				소속里
	田地	士族	戶口	田結	
耳谷里	×	×	·	·	晋城里
代如村里	△	△	·	·	琴山里
內坪里	△	×	·	·	杻谷里
昌善里	△	△	×	×	末文里
金多於里	△	×	·	·	松谷里
吾邑谷里	○	×	·	·	永善里
西申大, 針谷, 加乙洞, 鳥山	×	△	·	·	大坪里
茅房谷, 宗化里	○	△	·	·	加西里

※ ○ 강세, △ 대등, × 열세, · 不明

表에서 보듯이 복구된 里들의 성격은 일단 이들을 통합했던 里(소속 里)들과 대등하거나 보다 열세였다. 이는 亂後의 통합과정이 인근의 有力里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결과라고 하겠으며, 그「有力」의 내용이 田地肥沃度보다 士族과 연결된 것으로 보아진다. 즉 田地의 경우 吾邑谷里나 茅房谷·宗化里가 이들을 폐합했던 永善·加西里보다 우세하고 나머지 代如村·內坪·昌善·金多於里도 대등하면서 폐합된 것은 田地(肥沃度)가 폐합의 기준이 아니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士族의 경우 폐합당한 里가 우세했던 경우는 하나도 없이 열세 또는 대등하였다. 이는 바로 亂後 再編時 폐합되는 里들이 士族存在의 여부에 관련되어 인근 士族勢가 강한 里에 소속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아진다.

(26) 〈서울大 古 4790〉의 草本《晋陽誌》卷首와《續修晋陽誌》(국립중앙도서관藏)의 跋文을 통해 이를 밝힐 수 있다.

(27) 여기서 戶口·田結數의 대비가 거의 不明으로 처리된 것은 복구된 里의 경우 구체적인 통계치를《晋陽誌》가 수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며, 결국 田地肥沃度나 士族住居에 의한 대비가 된 셈이다.

〈表 VIII〉 復舊 12개 里의 성격(占有比)

구 분		田品				住民				
		肥	中	瘠	不 明	士 多	士 居	無士平民	雜 賤	不 明
亂 前 총 112 개 里		47	29	35	1	24	13	51	12	12
亂 後 폐 합 53 개 里		26	10	16	1	5	6	28	9	5
재편시復舊	數 12개里	4	3	5	—	3	3	4	1	1
	(亂前총里中) 점 유 비%	8.5	10.4	14.3	—	12.5	23	7.8	8.3	8.3
	(폐합리中) 〃	15.4	30	31.3	—	**60**	**50**	14.3	11.1	11.1

위의 〈表 VIII〉은 우리의 이같은 관심을 좀더 분명하게 밝혀주리라고 여겨지는데 이 표는 壬亂前의 전체 里(112개)와 壬亂後 폐합된 53개 里 중에서 복구되는 12개里가 각각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한 것이다.

우선 재편시 복구된 12개 里는 亂前 112개 里의 10.7%를 점유하고 있으며 田品 및 住民構成上에서 7.8%~23%로 대체로 이 점유율에 필적하고 있다. 그러나 폐합 53개 里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 22.7%(53개 중 12개 里)에 비할 때 대체로 上廻하는 경향이 돋보이며 특히 士族住居의 例(「士多」가 60%, 「士居」가 50%)에서 강한 비율을 보이고 있음이 주목된다. 즉 이것은 폐합의 조건에서 예외적으로 士族居住地였음에도 폐합되었던 경우[28]가 이 복구과정에서 절반이상 복구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인데, 이들 복구된 里 가운데 加乙洞里·茅房谷里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韓末까지 존속되고 있다. 이를 통해서 보더라도 士族存在가 뚜렷한 里일수록 오랜 존속 내지는 종래의 위치 회복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田地의 면에서는 오히려 肥沃한 경우가 15.4%로 저조한 복구세였던 데 반해 「中」 또는 「瘠」의 경우가 30%, 31.3%로 평균치(22.7%) 이상 복구되고 있었던 것은, 역시 田地의 肥沃度 복구의 긍정적인 기준으로써 작용치 않았음을 제시해주고 있다.

〔**事例 III**〕: 再編과 士族集居里

다음으로 再編의 결과 士族이 集居하는 里의 변화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亂前 112개 里를 住民構成別로 그 卜居하는 田地의 肥沃度를 대비시킨 것이 다음의 〈表 IX〉이다. 이 表中 ① 깊은 상관율을 보이는 것은 역시 田地가 肥沃한 곳으로, 주민구성에 두관하게 45% 이상이 집중되며 ② 전체 112개 里中 25개를 점유하는 〈無士·平民類——肥沃〉의 里와 18개를 점유하는 〈無士·平民類——瘠薄〉의 里가 거의 절반에 해당되고 있음이 주목된다. 따라서 亂前의 各里는 住民構成上에서 볼 때 無士·平民類가 集居하는 肥沃한 里가 적지 않다는 점이나 士族이 卜居하는 지역이 肥沃·中·瘠薄에 고루 분포된다는 점에서 비교적 均等

(28) 「士多」 5개里 中 3개里, 「士居」 6개里 中 3개里.

〈表 IX〉 壬亂前 112里의 住民과 田品 ( ) 안은 %

住民＼田品	肥	中	瘠	不 明	計	比 率
士 多	11(45.8)	9(37.5)	4(16.7)	·	24(100)	21.4
士 居	6(46.2)	4(30.7)	3(23.1)	·	13(100)	11.6
無士·平民	**25**(49.0)	8(15.7)	**18**(35.3)	·	**51**(100)	**45.5**
雜 · 賤	4(33.3)	2(16.7)	5(41.7)	1(8.3)	12(100)	10.7
不 明	1 (8.3)	6(50.0)	5(41.7)	·	12(100)	10.7
計	47(42.0)	29(26.0)	35(31.3)	1(0.7)	112(100)	100

한 조건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亂後 再編을 거치면서 이러한 互惠的 條件은 무너진다. 즉 再編後 존속한 59개 里를 역시 앞의 表와 같은 방법으로 작성한 것이 다음의 〈表 X〉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전체적으로 里數가 반감((112개→59개)되는 상황에서 〈士多—肥沃〉里는 11개에서 10개로 그대로 남아 있으나, 亂前 25개나 점유하던 〈無士·平民—肥沃〉里는 6개로 완전 감소되어 버렸다는 사실이다. 이 변화는 앞의 〔事例 Ⅰ〕의 〈表 Ⅴ〉에서 지적된 것과 같은 내용인데, 이것은 폐합된 里의 주류가 無士·平民類의 居住地였음을 나타내고, 이 재편 과정에서 폐합된 里가 주위의 士族勢가 강한 인근 里에 흡수·편입되었다는 앞의 事例 Ⅰ, Ⅱ의 결과는 결국 士族이 선택적 혹은 자기중심적 里坊再編을 하였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表 X〉 再編時 遺存된 59里의 성격(田品·住民) ( ) 안은 %

住民＼田品	肥	中	瘠	不 明	計	比 率
士 多	**10**(52.6)	6(31.6)	3(15.8)	·	19(100)	32.2
士 居	3(42.8)	2(28.6)	2(28.6)	·	7(100)	11.9
無士·平民	**6**(26.1)	6(26.1)	11(47.8)	·	23(100)	38.0
雜 · 賤	2(66.7)	1(33.3)	·	·	3(100)	5.1
計	21(35.6)	19(32.2)	19(32.2)	·	59(100)	100

이것은 주민구성별 비율상에서도 단적으로 증명된다. 즉 앞의 〈表 Ⅸ〉와 위의 〈表 X〉을 비교할 때 士族, 雜賤類에서는 커다란 변화가 보이지 않는데 비해 平民類는 38%로 7%가 감소되었으며 이 감소된 7%가 士族集居地로 이동하였음(21.4→32.2%로 증가)을 본다. 물론 이러한 士族中心的 또는 선택적인 田地의 확보가 里坊再編의 目的은 아니었겠으나 이같은 결과는 어쨌든 地方行政上에 作用한 士族의 鄕村影響力과 무관한 것이 아닐 것이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物產·田結·戶口數의 多寡가 우선 里坊編成의 제 1 차적인 요인이었다고 생각되나, 위의 분석에서 낱낱이 지적된 바는 그와 같은 원칙론과 거리감이 있는 것이었다. 과연 이것이 晋州라고 하는 특정지역만의 性向이었는지, 아니면 朝鮮後期 地方士族의 영향력 자체가 그 土着社會에서 倍增되어 간 보편성의 부분적 노출인지는 명확히 판단할 수 없으나 어쨌든 晋州地方의 士族이 里坊編成上에 중요인자로서 기능을 하고 있었음은 명

백한 사실이었다. 그리고 이같은 사실은 더 나아가서 晋州地方 士族의 地方行政에의 영향력 행사나 참여도를 읽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되어 준다.

그러나 본고에서 보다 큰 필자의 관심은 우선 晋州地方의 경우 본격적인 面里體制가 里坊體制의 오랜 지속으로 인하여 지연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各里의 個體的 면모도 오랜 동안 유지·전승되었을 것이라는 가설에 당도하게 된다. 그리하여 이들 里의 存在가 자체의 배경을 어떠한 형태로 이용하며, 또 그 배경의 실체는 과연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같은 일련의 과정은 士族의 향촌사회에서의 영향력과 직결되고 있음을 事例 Ⅰ, Ⅱ의 분석에서 발견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士族的인 기본 배경을 다음절에서 중점적으로 살피기로 하겠다.

3. 再編背景과 士族

晋州는 麗代부터 中央政界에 많은 인물들을 진출시켰던 지역이고, 특히 下代 武臣執權期 이후는 崔忠獻의 外鄕이기도 했으므로 士姓들의 上京從仕가 더욱 활발했다.(29) 그리하여 朝鮮前期에는

三公六卿 半是州(=晋州)人 入翰林十二郎 輩出一時 當時嶺南人才 半在晋陽之語(30)

라 할 만큼 극성을 이루게 되었던 것이니, 河崙(1347～1415), 河演(1376～1453), 姜惟伯(1356～1402), 鄭以吾(1354～1434), 鄭陟(1390～1475) 등의 家門은 바로 그 중추였으며 이들 在京從仕士族들은 中央의 견고한 기반을 토대로, 晋州本貫姓氏의 전국 확산과 함께 本貫地 晋州에 在地的 土臺를 쌓아갔다.

즉, 이들은 仕官中의 本鄕 往來는 물론이려니와 벼슬에서 물러난 뒤에도 辭官歸鄕·歸老本鄕, 혹은 歸葬故鄕의 형태로 本鄕과 유대를 지속시키고 있었으니, 이는 곧 그들의 在地的 基盤確保의 의도나 의미가 큰 것이었다고 여겨진다.(31) 그같은 경향은 鶴峯 金誠一(1538～1593)의 눈에도 晋州士族(鄕族)의 세습적 우위권이

相臣·將臣 世執鄕權 雖後孱孫 舊習遺存(32)

이라는 정도로 비쳤던 것을 보면 晋州에서 在京從仕人系列의 강한 점착성은 壬亂前까지 꾸준히 遺傳되어 온 모양이다.

---

(29) 李樹建, 『嶺南士林派의 形成』(嶺南大 民族文化叢書 Ⅱ, 1979).

(30) 《晋陽誌》 卷 4. 古蹟條, 이같은 晋州士族의 자부심은 族譜序文이나 文集類에서도 자주 나타난다.

(31) 특히 조선개창기의 핵심인물이었던 河崙(1347～1415) 같은 경우는 致仕歸鄕할 때 太宗으로부터 勳勞의 功을 인정받아 州內 中安里 田稅 100結을 下賜받았는데, 그는 이를 留鄕所에 기증 鄕父老의 宴飮之資로 삼았으며, 贊成을 역임했던 鄭驤은 辭官後 晋州鄕所의 座首가 되었다(上揭書 卷 4. 叢談條).

(32) 金誠一, 《鶴峯先生遺稿》 附錄 卷 2. 〈文殊誌〉.

그러나 이같은 在京勢力과 일정한 유대속에서 세습적 鄕權을 누려오던 晋州鄕族이 일대 타격을 입는 사건이 壬亂直前에 발생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晋州豪獄이다.

(1) 晋州豪獄(1576년)

이 사건의 발단은 外樣으로는 金誠一도 이미 언급한 바처럼, 비록 잔열한 자손이라도 父祖의 세습적 전통을 이어 鄕權을 잡았다는 사실——不適合性——이 논위될 수 있는 것이나, 실제 내면적인 이유를 찾으려면 좀더 세밀한 주의를 요한다. 이 豪獄은 1576년(宣祖 9) 州吏 姜世雲의 吏房請囑에 대한 座首의 반발에서 기인되었는데,[33] 姜世雲은 평소 識面之間인 權轍(당시 領議政, 權栗의 父)에게 吏房의 職任을 얻을 수 있도록 부탁하였고 이에 權轍은 晋州牧使로 부임하는 具抃을 통해 그 請囑을 의뢰하였다. 그러나 姜世雲을 吏房에 임명하려는 牧使 具抃에 대하여 당시 座首였던 姜彦平은 그가 吏房에 부적합한 인물임을 들어 牢拒하였고 이 사실이 具抃을 통해 權轍에게 알려지자 甚怒한 權轍은 晋州를 「豪强張甚 難治之邑」으로 단정, 王에게 陳啓하였다. 朝廷論議 끝에 慶尙監司로부터 治斷의 命을 받은 牧使 具抃은 새로 선출된 座首 申霑으로 하여금 鄕人을 聚會케 한 다음 缸筒에 豪强武斷의 人物名을 적어 넣게 하여 그 중 多出者인 李景星·河春平·李嘉春·趙光翊·柳震·李應寅·孫燦 등 소위 土豪를 投獄하였던 것이다. 이 獄事로 인하여 李景星·孫燦을 제한 모든 사람은 옥중에서 참사했고, 巨室 10여家가 이후 10여년동안 재산을 탕진하게 되었다. 한편 이 豪獄의 여파는 종래 河崙이 鄕所에 기탁, 鄕丈老의 宴飮之資로 삼았던 田結마저도 추탈당하게 하였던 것이니, 具抃에 뒤이어 1578년 부임한 牧使 李濟臣은, 晋州의 豪習이 鄕所에서 비롯된다는 이유로 鄕射堂에 보관하였던 太宗의 敎旨를 불태우고 中安里 田稅를 탈환하였던 것이다.

이같은 豪獄은 직접적으로 이 지방의 토착사족들에게 심각한 타격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후 壬亂을 전후한 시기에 있어서 晋州地方士族의 성격변모를 예고하는 일대 전환점이 되었다. 이제 이 豪獄과 관련하여 몇 가지 당시 晋州地方士族이 지녔던 특징적 성격을 주목, 이후 晋州地方의 士族活動과 연결함으로써 그 推移를 파악하고자 한다.

우선 晋州地方士族의 鄕權保持와 관련하여 이미 이 豪獄이 있기 수년전에 朝廷에서 晋州士族에 대한 물의가 거론된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즉 宣祖 2년(1569) 5월 甲辰條 實錄記事를 보면 慶尙監司가 晋州儒生의 鄕風糾正을 앞세운 毁家黜鄕事件에 대한 啓를 올리고 있다.[34] 이 《宣祖修正實錄》의 晋州士族에 관련된 기사는 물의로서 계속 논란이 되는 바

(33) 晋州豪獄의 內容은 《晋陽誌》 卷4 叢談條에 보인다. 「本州豪强之禍 起於領議政權轍……丙子年(1576) 具抃除牧使 (州吏) 姜世雲 請爲吏房於權 權囑於牧使 其時座首姜彦平 以世雲不足於上壇 牢拒 蓋鄕吏有上中下三壇 而吏房之任 鄕所必以上壇吏擇之 牧以此通于權 權甚怒 啓於榻曰 晋州土豪張甚 已爲難治之邑 不可不懲 即監司治之……」

(34) 《宣祖修正實錄》 卷3 宣祖 2年(乙巳) 5月 甲辰條 : 慶尙監司啓 晋州儒生 毁人家斷罪事 先是晋州故進士河宗岳後妻 寡居以淫行 聞於鄕里 處士曺植 偶與門人鄭仁弘·河沆等言其事 仁弘等通于監司按治起獄 死者數人 植又以其友人李禎 以河妻烟黨 陰庇其事 發書絕文 歷數其罪 河沆等 憤其獄不成 故推官被臺劾坐罷者多 朝論亦相左右……」

이는 曹植(1501～1572)·鄭仁弘(1535～1623)이 연루된 黨禍와도 바로 연결되어진다.

그러나 이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당시 晋州士族의 鄕村支配力·鄕權掌握의 실체를 읽을 수 있으며, 이런 사건은 기사 그대로처럼 몇몇의 朋徒가 결행하였다기보다는 조직력이나 同集團의 배경이 있을 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된다.

둘째는 이같은 조직력과 관련된 사실로써 州吏 姜世雲의 吏房不適格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근거가 분명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제시된 규약의 片鱗은 '上壇人이 아니면 吏房이 될 수 없다'는 것뿐이었으나, 이 鄕規의 강력한 제시는 바로 이 地方士族의 外壓에 대한 우위성이나 배타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牧使(外壓)에게 「牢拒」할 만큼 이 鄕規를 중심으로 하는 鄕族在來의 유지기반이 있었다는 사실이다.

셋째는 晋州地方士族의 후원자 내지는 배후세력으로서 在京人의 존재에 관한 문제이다. 이는 일단 豪獄을 감수하게 된 사실에서도 朝鮮前期와 같은 강한 견인성이 비교적 퇴화하고 있음을 추측하게 되지만, 실제 당시 晋州本貫姓氏들의 미미한 官歷이나 孱孫으로 지칭되면서도 遺習에 따라 鄕長이 된다는 金誠一의 지적은 在地的 基盤의 나약성을 실감케 한다. 결국 州吏 姜世雲이 이들을 넘보고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려 했던 것이나 在地勢力에 대한 京在所 혹은 新任牧使의 강력한 태도도, 기실 在地勢力의 퇴보와 일정한 연관하에서 가능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마지막으로 이 豪獄의 처리과정과 被禍者의 문제인데, 監司의 命을 받은 牧使는 우선 座首를 改差하고 그를 통해 투표에 의해 鄕人의 怨聲을 해결하는 각도에서 土豪를 收捕, 그 대부분을 嚴刑에 처하였다. 원래 사건의 시발부터 어떤 적개심의 표출이었던 이 豪獄이 "鄕人怨聲盈路[35]"의 상태로 종결된 것은, 일면 그것이 外壓과 在地勢力 사이의 절대적인 세력차에서 기인된 것으로 이해되기도 한다.

부연하면 朝鮮前期 晋州地方의 鄕權은 在京從仕勢力과의 일련의 유대속에서 성장·발전하였고 그 重層的 深化過程에서 인습적 우월을 固着시킨 것이었으나, 前期의 강력했던 在京從仕人들의 在地基盤이 점차 쇠퇴하면서, 在地鄕族에 대한 京在所系統의 압력이 이같은 豪獄으로 진전되는 배경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2) 豪獄以後의 士族動向 ——里坊再編期의 士族活動——

물론 豪獄이 발생했던 16세기 후반기 진주지방사족의 활동도 이제 거론하려는 里坊再編期와 긴밀한 상관이 있을 것이다. 즉, 영남사림파의 형성에 있어 직접적인 계도자로 지목된 金安國(1478～1543)의 慶尙監司時 治積이나, 그의 비호하에 향촌활동을 전개하였던 鄭汝昌·趙之瑞·李仁亨·鄭士龍(이들은 모두 晋州에 來寓)의 영향, 그리고 이들의 활동기반위에 晋州를 慶尙右道 士林淵藪로까지 지칭케 만든 曹植(1501～1572)의 來寓는 진주지방 사족의

(35) 前揭〈文殊誌〉

성장에 괄목할 만한 영향을 주었으리라 짐작된다.

그것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은 晋州儒生(曹植·鄭仁弘·河沆 등)의 毁家黜鄕事件(註 34)으로 나타나며, 이 사건은 결국 黨禍와 직결된 정치적 曲筆로도 이해되지만 이들의 적극적인 향촌활동의 한 단면을 보여주는 例일 것이다. 본절에서 필자는 이같은 士林系의 鄕村活動과 관련하여 몇가지 사실을 중점적으로 例擧함으로서 里坊再編에 작용할 수 있던 士族的 배경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하에 제시된 내용들은 《晋陽誌》에서 추출한 것이다.

A. 「寶長庫」의 復立: 寶長庫는 養士의 行用 經費를 充用하는 일종의 養賢機構 혹은 財團이었다. 처음 이 寶長庫가 설립된 것은 豪獄이 있던 10년 뒤인 1586년(宣祖 19), 당시의 晋州牧使 李裕仁의 발의에 의해서였다.[36] 官備의 성격이 강한 寶長庫는 설립 당시 白米 300斛, 太租 100石, 守奴 1명을 官으로부터 급여받아 매년 그 殖利로써 生進 및 入格儒生의 守齋·居接費用에 充當케 하였다. 그러나 이 官設 寶長庫는 未久에 壬亂을 맞아 廢해지고 亂後 1610년(光海君 2)에 復設된다.

이 亂後復設은 官備가 아닌 鄕人의 기금모집으로 성립된 것이나, 豪獄時 문제의 대상이던 鄕射堂의 重建(1609년)과 거의 동시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일단 주목되는 성격을 지닌다. 즉, 앞서 설명한대로 鄕射堂이 晋州豪强의 소굴로 지칭된 이상 그 廢堂이야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여지지만, 이 鄕射堂이 亂後重建된다는 것은 일단 鄕射堂이 종래의 鄕村支配勢力의 母體로서 지닌 바 기능을 어느 정도 회복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진주에서의 士族動向은 朝鮮前期의 강한 견인력이 후기로 내려올수록 점차 쇠퇴했다고 하는 앞절의 견해와 연관시켜, 일단 被禍라고 하는 계기를 起點으로 하는 새로운 質的 變貌를 당연히 예견하여야 하는데 이들 寶長庫復設이나 鄕射堂重建이 바로 그 변모의 일면이라고 보아지기 때문이다.

즉 豪獄 후 現職牧使에 의해 官備創設되는 寶長庫는 단순한 養士의 目的이외에 다분히 豪獄에 대해 「怨聲盈路」했다는 鄕論에 대한 무마 내지 회유의 수단으로 성립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만약 그것이 단순한 養士의 목적이었다손 치더라도, 이후 전개되는 士族活動의 한 계기가 되었을 것임은 자명한데, 이는 뒤이은 임란을 경과하면서 진주지방에서 生進出身의 순수한 지방사족이 鄕權의 주요 核으로서 능동·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것과도 상관됨이 클 것이다. 戰亂의 와중에서 민중의 中央執權層(혹은 官)에 대한 期待의 霧散이 상대적으로도 義兵의 中樞가 되었던 在地士族에게 斜傾되는 측면도 상정되며, 실제 戰亂中에 부각되는 士族層의 同質性 形成, 향촌주도의 경험은 바로 사족층이 이후 지방사회에서 주도권을 획득하는 하나의 계기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B. 亂後 復舊活動: 한편 이상과 같은 결속력은 亂後의 복구활동과도 연결되는데, 鄕射堂重建·寶長庫復設 외에도 晋州地方에서는 鄕校重修(1603년), 德川書院賜額(1609년), 大覺

(36) 《晋陽誌》 卷 1. 寶長庫條

書院建立(1610년), 上寺里約 重修(1611년), 南・北面書齋重創(1613년) 琴山洞約 增補(1616년) 등 士族의 참여와 기능이 주목되는 일련의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37)

이들 제반 복구사업은 대부분 鄕人 혹은 土着士人의 적극적인 활약에 의해 성립될 수 있는 것이며——물론 이같은 亂後復舊活動이 비단 晋州地方에만 국한된 일은 아니겠지만——이들 활동을 통해 (1) 守令이 士族을 협조집단으로 회유・흡수하지 않으면 안될 만큼 鄕論의 中心體로서 士族의 참여가 필요 불가결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이 일련의 활동을 추진하는 가운데 (2) 鄕里士族들의 자체 결속력——同質性——을 증진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은 쉽게 끌어낼 수가 있다. 물론 士族의 입장에서 보면 守令權과의 일정한 협조체제를 유지할 현실적인 필요도 상응하여 생각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이런 유기적 협조체제는 명목상・외형상으로의 협조를 의미하는 것일 뿐 종래의 〈守令—京在所—留鄕所〉가 밀착된 三益體制와는 질적으로 상이한 것이었다고 보아진다.(38)

물론 이상에서 가정해본 진주지방 士族의 성장은 반드시 수령권과의 마찰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격이고 晋州豪獄의 例와 결부시키면, 〈경재소—수령—향리〉로 연결되는 세력과 〈유향소—재지세력화한 士族〉이라는 상대적인 세력의 갈등으로 이해된다. 결국 진주지방의 경우 유향소를 중심으로 鄕村社會에서의 기득권을 유지하려던 재지세력은 종래의 강했던 在京官人과의 직접적인 유대를 잃고 변질된 京在所의 위압과 대결하여야만 했던 것이다. 한편 1603년(宣祖 36)의 京在所 혁파도 이 지방사족의 성장과 결부시켜 이해할 수 있는데, 이 경재소의 혁파가 일차적으로는 中央官人이 현직의 지위로써 지방사회에 대한 지배권행사를 배격하는 입장에서 추구된 것이기는 하나 이 역시 향촌자율이라는 면에서는 官人 참여폭을 축소시킨 결정적 요인이 되었음을 인정해야 될 것이다. 京在所制度의 革罷는 단순한 하나의 제도적 소멸이라기보다, 士林派가 추구해 온, 守令權 내지 이와 밀착된 官人主導形의 鄕村制約에 대한 鄕村勢力主導의 秩序樹立運動의 결실이자 이후 地方士族이 완전한 鄕村支配勢力으로 군림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된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이다.

물론 지방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감안하여야 할 것이지만 결국 이 시기를 통해 書院의 융성이나 관인계열과 순수한 토착계열이 서서히 分岐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조선전기 이래 士林계열이 꾸준히 추구해 오던 鄕村自律의 실현에 그들의 실력이 한층 밀착되어 가고 있음을 시사한다.

C. 晋陽三老와 鄕村自律策: 끝으로 진주지방의 경우 地方士族의 구체적 活動의 片鱗으로서 《晋陽誌》 人物條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 있다.

鄭夢虬: 字仲祥 長鬐人 早有文名 屢擧不中 待人以誠 處事以公 與申霑・姜深議定一州徭役 便宜施行

(37) 한편 16C부터 추진된 川防개발을 地方士族의 鄕村活動을 예증한 한 단면이라고 본다면(李泰鎭, 「16세기 川防灌漑의 발달」(『韓沽劤博士停年紀念史學論叢』 1981)), 17C初의 이같은 활동상은 그 일련의 작업으로 이해해야 될 것이다.

(38) 同註 2)

鄕人皆服其均役 謂之晋陽三老 ……(39)

이 記事中 소위 「晋陽三老」라고 지칭된 鄭夢虬·申霑·姜深 3인은 모두 文名이 있었음에도 科擧로 出身하지 못하였으며, 특히 申霑은 晋州豪獄後 사건의 사후수습에 참여한 座首바로 그였다, 어쨌든 이들 在野士族이 議定했다는 州의 均役法이 鄕人皆服하는 결과를 낳았다는 사실이 주목되는 바, 이것은 우선 의정된 均役의 내용이 향촌사회의 의사를 집약한 것이 었거나 혹은 가장 접근된 타당한 것일 때 가능한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들이 自律的인 法規를 만들어 시행할 수 있었던 배경이 존재하였음을 시사한다.

다만 現傳資料로서 구체적인 均役의 내용을 밝힐 수는 없기 때문에 그 內容의 타당도를 상세히 예견하지 못하나, 施行後 鄕人의 悅服事實만으로도 그것이 긍정적인 自救策이 되었음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모름지기 鄕村社會에서 士族의 우위권이 보장되는 것은 民衆의 기대치와 밀접히 상관되며——특히 士族의 鄕村支配權 확보과정에서는——향촌 자율의 모색은 바로 향인들의 利益과 士族의 利益이 어느 정도 절충되는 수준에서 가능한 일일 것이다. 그속에서 士族의 권위 또한 생성·확대될 수 있겠기 때문이다.(40)

그러나 보다 관심있는 문제는 전제한 晋陽三老가 과연 어떤 조직적 배경을 가지고 그 같은 自律的 措置를 취할 수 있었느냐에 있다. 豪獄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晋州地方의 鄕規나 鄕案의 존재를 예견했던 것처럼 향촌사회를 통제하는 法規나 그 主掌處로서 우리는 鄕所를 주목하거니와, 晋州地方에 일반적인 향약류의 시행이 이미 貫行되었던 것은 분명하고(41) 결국 앞서 사례로서 분석한 바처럼 里坊再編이나 이 均役施行도 그런 議定·主掌기구를 통해 가능했으리라고 생각된다. 특히 晋州鄕所에 貫鄕姓氏의 族譜가 보장되었던 것이나, 晋州地方의 鄕籍案으로써 《晋陽司馬案》 《靑襟錄》 《蓮桂案》 등이 계속 修補되어 온 것은 이같은 조직력의 오래고 강한 권위와 존재를 시사해준다.(42)

이상의 몇가지 사실은 구체적인 鄕權의 소재나 조직의 실체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다소 미흡한 감이 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진주지방 사족들의 스스로의 권위와 응집력을 구현하기 위해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또 이러한 일련의 활동을 토대로 士族權을 향촌사회에 심어나갔음을 읽게 된다. 그리고 이 점은 본고와 바로 관련되지는 않지만, 조선후기

(39) 《晋陽誌》 人物, 鄭夢虬條

(40) 여기서 우리는 壬亂을 중심으로 그 以前과 以後의 社會를 같은 관점에서 파악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무리임을 느낄 수 있다. 그것은 앞 시기가 士族權 배태나 성장의 계기로써 향촌지배권의 확장을 기도한 시기임에 반해 뒤의 시기는 일단 士族의 鄕村支配權이 定着된 뒤 그 자체내의 주도권 쟁취(鄕族分岐)나 民衆立場의 代辯者的 비판세력 성장이 이뤄지는 시기였던 것이다.

(41) 《晋陽誌》 各里條 琴山洞條에 있는 琴山洞約序에서 『人士之同居一洞者 數至五六十 則不可無洞案 洞案既成 則不可無洞約』라고 그 일반성을 강조하는 것이나, 上寺里洞約序에서 舊規·洞案을 修補함이 비단 특별한 사정에 기인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는 것은 이 지방의 士族 또는 그들의 鄕村活動이 오랜 뿌리를 가지고 있음을 일러준다. 특히 金安國(1478~1543)의 활동상은 이러한 상황과 바로 연결되고 있다.

(42) 晋州地方 士族의 강한 鄕村支配力은 이상에서 편편이 지적한 외에 姜民瞻祠의 士族 首獻담당(종래에는 戶長이 담당)이라든가 川防修補時의 鄕人動員에서도 파악될 수 있다.

의 신분구조가 兩亂後에 급속히 변모 또는 와해되었다는 종래의 견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盧鎭英[43] 등의 논문과 비교해 재고를 요하는 사항이다. 물론 조선후기까지는 긴 기간을 대상하여 일별할 때 전제한 신분구조의 변화는 異論의 여지가 없지만, 적어도 17세기전반의 사회는 그에 반대되는 국면이 있는 또 다른 특징을 지닌 것으로 보인다. 즉 官人系列·非官人系列의 분기나 儒·鄕間의 갈등이 심화되는 18세기이후의 상황은 이같은 15세기이래의 士族中心的 鄕村支配構造가 일단 정착되는 어떤 시기를 始發點으로 해서 진전된 것이며, 그 시발점이 兩亂이라는 견해는 다소 재고되어야 할 여지가 있는 것 같다.[44]

IV. 結　　言

本稿는 진주지방의 경우를 대상으로 임란후의 里坊再編을 그 鄕族的 배경과 관련시켜 분석한 것으로서 ① 壬亂을 계기로 이루어지는 里坊組織의 변화실태와 ② 里坊再編 과정에서 특징적으로 부각된 士族의 영향력, ③그리고 이러한 鄕村社會變化에 對處·參與할 수 있었던 士族的 基盤을 추적한 것이다. 이제까지 살펴 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壬亂前 晋州地方의 各里는 5개面(州內와 4方位面) 아래에 소속되고는 있으나 아직 「面」이 里보다 한 단계 우위에서 있다기보다는 단순한 方位表示的 성격이며,

(2) 各里는 여러 개의 자연촌적 존재로서의 屬坊(洞·村·谷·川) 5~6개를 관할하는 地域村이었다. 그리고 이들 里는 面里制의 정착과정과 더불어 다른 지방의 「面」과 같은 규모로 성장해 갔으나, 晋州地方의 里坊이 갖는 특이한 사실은 이들 里가 비교적 오랜 전통속에서 그대로 里名으로 존속하여 간다는 점이다.

(3) 한편 里로의 성장과 里名의 정착과정은 일단 屬縣·鄕·所·部曲 類의 직촌화 과정과 같은 궤도상에서 추진되었으나 자연촌적 존재의 ○○洞, ○○村, ○○谷, ○○川 등이 성장하여 주위의 屬坊과 합쳐져 里가 된 경우도 많다.

(4) 한편 壬亂을 거치고 난 뒤의 里坊再編은 우선 里數의 대폭 감소(亂前의 53%)와 平均屬坊數의 증가(亂前 5.6개 →亂後 8.2개)로 특징지워지며,

(5) 亂後再編時 폐합된 里나 폐합된 里 중 복구되는 例를 추적·분석할 때 주목되는 사

---

(43) 盧鎭英은 17C初의 山陰帳籍을 자료로 분석한 그의 논문 「17C初 山陰縣의 社會身分構造와 그變動」(『歷史敎育』 제25집 1979. pp.79~101)에서 17C의 帳籍을 분석한 Susan Shin (1672년 金化戶籍), Wagner (1663년 서울 北部戶籍)의 연구가 자신의 山陰帳籍分析과 같은 신분하락의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하고 이것은 18C의 호적을 대상으로한 四方博(大丘帳籍), 金容燮(尙州戶籍), Somerville (蔚山帳籍)의 연구결과 밝혀진 신분상승추이와 상반됨을 지적하였다.

(44) 韓永愚는 임란을 겪은 뒤 17C에 이르러 신분제가 와해된다는 종래의 견해에 반론을 제기하고 16C의 과도기를 거친 특권 지배층으로서의 양반은 17C에 이르러 뚜렷한 신분적 특권을 정착시켰다고 주장한 바 있다(韓永愚, 「社會階層과 社會移動에 관한 試論」, 제 7 회 『東洋學學術會議講演抄』 所收 197, p.9.).

실은 各里가 존속·폐합·복구되는 요인으로서 戶口·田地보다도 그 里에 士族이 존재하는가의 여부가 크게 상관되고 있었다는 점이며, 이는 진주지방 士族의 향촌사회에 대한 지배권 획득, 또는 그 영향력의 결과로 파악된다.

(6) 진주지방 士族은 조선전기 在京從仕人 系列의 강했던 재지적 기반이 무너지면서 〈경재소—수령권〉의 위압에 일시 압도(晋州豪獄)되기도 하지만 壬亂을 통한 抗戰主導, 復舊活動, 自救策의 강구 등 현실적인 향촌사회에의 기여를 바탕으로 사족자체의 결속력이나 그 지배권을 정착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결국 진주라는 한 지방의 사례를 검토한 本稿에서 筆者가 얻을 수 있었던 결론은 이상과 같은 단편적·개별적 사실에 불과하다. 그러나 朝鮮朝의 鄕村社會의 質的인 變貌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鄕村社會 自體의 內在的인 변화실태를 구체적 자료로써 예증한 사례가 빈약한 현재의 실정에 비추어 이같은 자료는 비록 里坊組織에 국한된 것이기는 하지만 전혀 무의미한 것이 아닐 것이다.

특히 壬亂을 거치고 난 뒤의 士族勢가 실제 향촌사회에 투영되는 배경이나 그 영향력의 실상은 비단 晋州地方에 국한된 내용이었다 할지라도 우리의 朝鮮後期社會——좀더 축약시켜 在地士族의 鄕村影響力——를 검토하는 한 빌미는 되리라 여겨진다. 그리고 本稿와 관련시켜 주목하지 않으면 안될 사실은 士族의 鄕村支配權 확보나, 朝鮮後期 社會에서 일반적으로 지목되는 〈官人·非官人系列의 分岐〉나 〈儒·鄕의 分岐〉는 이같은 일련의 士族支配權 定着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사실이다. 或者는 이런 里坊再編이 留鄕所나 士族層主導가 아닌 것으로 이해하려고 할지 모르나, 적어도 晋州地方의 경우 이 시기에 있어서 士族外의 鄕權所有層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分岐나 分散의 기운에 앞서 結束·擴散의 기대가 컸던 시기였기 때문이다.[45]

(1982. 5)

(45) 그러나 晋州라는 地域이 史上에서 부각되는 朝鮮末期의 상황은 그 근거와 과정을 언젠가 해명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고 이는 앞으로의 보다 깊은 연구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筆者는 晋州民亂 직전의 晋州地方 士族(幼學戶) 分布를 各里別로 추출하고 이 자료를 本稿와 관련시키고자 노력했지만, 역시 전제한 士族層의 分岐나 기타 세력의 混在與否에 대한 구체적 자료가 미비하여 별개로 구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자료(註 5)의 ④)에 의하면 1832년 현재 晋州地方의 里別 總戶數와 그 중 幼學戶數, 幼學戶의 流動狀況, 同姓集居實態, 幼學戶의 자체구분 등 그 면모를 밝힐 수가 있다. 관심있는 同學들의 끊임없는 연구로 이같은 여러 과제들이 명쾌하게 밝혀지기를 바라며 本稿가 이 일련의 과제를 해명하는 데 조그만 보탬이 된다면 더없이 다행이겠다.